

한국도시재생학회 윤리규정

2015년 02월 24일 제정
2019년 12월 1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도시재생학회 윤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도시재생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도시재생(Journal of Urban Regeneration)" "(이하 학회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부정행위의 기준 및 징계 등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 학회지 편집위원, 논문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연구윤리교육)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투고자 · 편집위원 ·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투고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학회지에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제출)

학회지 투고논문의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의 기본원칙 준수를 위해 학회가 제시하는 연구윤리 자가진단 목록과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공정성 의무)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 의뢰해야 하며,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의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의 성실성 의무)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 (투고논문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4조 (투고자 비밀보장)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5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16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17조 (표절)

- ① 표절이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용하였더라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 ②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
- ③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④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18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이중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과 이미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등

제21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자는 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 ①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조사의 진행절차·일정 및 조사위원 명단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23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①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의 진행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편집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엄수)

부정행위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조치건의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부정행위 조사 및 판정 등

제25조 (조사 원칙)

- ①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편집위원회 간사 또는 편집위원회가 임명한 자로 하여금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 (조사)

- ① 조사는 편집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조사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조사 결과 보고)

- ① 조사자는 조사활동이 종료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과 사실 여부
 2. 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도
 3. 관련 증거 및 증인
 4.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5. 조사자 명단
- ③ 편집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판정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8조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나 후임이 정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판정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한다.
- 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의결)

- ①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 후 14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0조 (판정 통보)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확정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의신청 및 재심의)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통해 판정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32조 (판정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투고자와 회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이중투고, 중복게재 등의 부정행위
 2.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고의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는 행위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향후 투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3조 (조사 시효)

-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이를 인지 또는 접수하였더라도 조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연구결과를 후속 연구에 직접 재인용하였을 경우와 그 부정행위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3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연구윤리위원회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제3장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이중투고,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 및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36조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따른 조치)

연구윤리위원회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제3장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이중투고,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학회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을 해당 학회지 논문 목록에서 철회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에 철회 사실을 공지한다.

제37조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제24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부터 자격을 정지시킨다.

※ 위의 규정은 한국윤리학회 윤리규정, 부동산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지 편집규정

2015년 02월 23일 제정
2019년 12월 1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지 편집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도시재생(Journal of Urban Regeneration)"(이하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 ① 학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심사의 위촉 및 논문편집과 관련된 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지역 및 전공분야에 따라 선임된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권한과 의무)

- ①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의 반려결정,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

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 ② 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 논문)

투고논문은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투고자의 자격 및 유형)

- ①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학회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② 학회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과 논문의 공동저자로 투고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 ④ 단독저자는 투고자가 1인인 경우로서 주저자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되며, 투고자가 2인 이상(공동저자)인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 ⑤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한다.
- ⑥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단,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본다.

제7조 (원고의 접수)

- ① 논문은 이메일(j_kura@naver.com)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접수일은 논문의 온라인 논문투고일로 한다.
- ③ 투고자는 논문 온라인 투고시 투고신청서와 hwp파일형식의 논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영문일 경우 MS-Word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 ④ 원고의 접수시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원고의 수리 및 게재)

- ① 원고의 수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리된 논문은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② 원고의 수리일은 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하며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

고를 우선으로 하여 접수순서대로 게재한다.

- ③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의 논문은 동일 논문집에서 3편 이상 게재될 수 없다. 다만 논문심사 지연 등 귀책사유가 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논문게재 편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 ① 투고자는 논문 제출시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게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는 논문인쇄분량이 10쪽을 초과하는 경우 1쪽당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게재료는 14쪽까지 1쪽당 20,000원, 14쪽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1쪽당 30,000원으로 한다.
- ③ 별쇄본은 20부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투고자가 다색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심사료 및 게재료 등은 투고자 이름으로 논문 투고 및 게재확정시 학회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 ⑥ 학회지가 등재후보지로 될 때까지 투고료와 게재료를 면제한다.

제10조 (발행)

- ① 학회지는 년 3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4월 말일, 8월 말일, 12월 말일로 한다.
- ② 학회지 발간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원할 경우 책자형태로 된 학회지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규정

제1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심사위촉)

- ① 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해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 ② 논문심사 위촉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 ③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 자료를 지상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의 평가)

- ① 심사자는 주제의 적절성, 기존 연구의 검토과정, 논문전개의 논리성, 분량의 적절성, 표·그림·지도 형식의 적절성, 학술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논문을 평가한다.
- ② 심사자는 현상대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시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3명의 심사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한다.
- ④ 종합 판정결과가 현상태게재 또는 수정후게재인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다.
- ⑤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 심사기준

1차 심사			2차 심사 또는 재심	게재 여부 판정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심사 생략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 ‘게재확정’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편집부가 결정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가능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확정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하지 않음’
게재불가	게재불가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심사 생략	‘게재하지 않음’

- ⑥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5장 투고논문 작성규정

제14조 (일반사항)

- ①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한글2002 이상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 ② 논문 한 편의 분량은 B5 용지 규격으로 1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9조에 의거하여 투고자는 1쪽당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총 25쪽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한다.
 - 1. 논문제목 (국문, 영문)
 - 2. 저자명 (국문, 영문)
 - 3. 요약문
 - 4. 주제어 (국문, 영문)
 - 5. 본문
 - 6. 인용문헌
 - 7. 부록 단, 부록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 ④ 요약문(주제어 포함), 본문, 인용문헌은 양쪽정렬로 편집한다.

제15조 (사용어 및 표기)

- 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국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로 표시함으로써 난해한 외래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
- ② 본문 중의 로마자를 사용하는 외래어의 표기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 단, 고유명사의 첫 글자, 대문자를 쓰는 약어, 교육부 과학기술용어,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문자표기가 가능하다.
- ③ 숫자 및 수식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2. 분수는 가급적이면 $\frac{1}{3}$ 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1/3으로 쓴다.
 - 3. 수식은 줄(행)을 바꾸어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 4. 수식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 기호부터 행을 바꾸고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 "-", "x" 등의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 5. 수식의 첨자는 인쇄가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6. 수식은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제16조 (단위 및 기호)

- ①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척관법이나 ft-lb법 등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전항 이외의 필요한 관용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시멘트 1포대(40kg)
- ③ 기호는 최초로 기술된 장소에 기호의 정의를 문장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동일 기호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그림 및 표)

그림과 표는 각각 논문의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하단의 중앙에 기재하고,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상단 좌측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림 및

표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각각의 그림 및 표에 대하여 a), b)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 ②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며 표의 모양은 윗선은 진하게 나머지 선은 보통선, 왼쪽과 오른쪽 선은 없앤다.

(예)

표 2. 해외 도시재생 사례연구

사례지	내용

제18조 (주기방법)

- ① 본문의 주석은 모두 각주로 처리한다.
- ② 주석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장, 어구, 또는 단어의 오른쪽에 위첨자로 “1)”, “2)” 등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주로 설명을 붙인다.
- ③ 본문 또는 각주에서의 인용표기는 다음과 같다.

1. 본문 또는 각주에서의 인용은 “저자(년도)” 또는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단, 인터넷 주소의 경우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5), (홍길동, 2005)

2.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표 년도의 순서로 인용한다. 괄호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 년도;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5)과 김길동(2006), (홍길동, 2005; 김길동, 2006)

3. 저자는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성(姓)과 이름을 함께 붙여쓰고,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성(last name)만 쓴다.

4. 저자가 2인 공동저자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 · 저자”로,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and author”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 김길동(2005) 또는 Lynch and Smith(1990)

5. 공동저자 3인 이상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 외”,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et al.”로 표기할 수 있다.

(예) 홍길동 외(2005) 또는 Lynch et al.(1990)

6. 동일 년도에 동일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여 구분한다.

(예) 홍길동(2005a), 홍길동(2005b)

7. 본문이나 각주에서 문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 ”)로 표시한다. 다른 사항은 인용표기 방법에 따른다.

제19조 (인용문헌의 기재방법)

- ① 인용문헌은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②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기타 언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로 한다. 국문 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 나, 다 순서로, 영어 등 로마자 문헌은 저자의 성(성이 동일한 경우는 **first name, second name** 등)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기타 언어의 문헌은 한글 발음의 가, 나, 다 순서로, 인터넷 자료는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 ③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발표 년도의 순서로 기재하며, 발표 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이고 그 순서대로 기재한다.
- ④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명기해야 한다.
- ⑤ 쪽(페이지)이 2쪽 이상인 경우에는 "-"로 표기하고, 쪽의 모든 숫자를 표기한다.

(예) 332-334

인용문헌의 표기방법 예시

<단행본 및 보고서> 저자,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 윤일주, 1996. 한국 건축양식 80년사, 서울: 치정문화사.
- Dovy, A., 1987. *Conservation and Planning*, London: Hutchinson.
- Bradley, James E. and Muller, Richard A., 1990. *Cities Then and Now*, Grand Rapids: Eldermans Publishing Co.

<학회지 게재 논문> 저자, 발표년도. "제목", 「학술지 명」, 권(호): 쪽 수.

- 김길동, 1995. "역사환경 관련법이 농촌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0(3): 23-45.
- Gerloff, R., 2002. "Rediscovering the Village," *Utne Reader*, 51(2): 12-34.

<학위논문> 저자, 취득년도. "제목", 학위명, 취득학교명.

- 김길동, 2005. "문화재보호법 연구 - 문화재 향유권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Jackson, J. B., 2002.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인쇄 중 또는 미발표 자료> 저자, 작성년도. "제목", 「학술지 명」 (인쇄 중).

- 김길동, 2001. "역사환경 관련법이 농촌지역에 미친 영향", 「국토계획」 (인쇄 중).
- Gerloff, R., 2002. "Rediscovering the Village," *Urban Planning* (in press).

<학술대회 발표논문> 저자, 발표년도. “제목”, 학술발표대회 명칭 또는 「발표논문집 명칭」, 발표대회장소: 조직단체.

- 홍길동, 2006. “한국의 지방화와 도시경쟁력”, 「200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정부간행물 및 통계연보> 기관명, 발행년도. 「간행물명」, 출판지.

- 서울특별시, 2007. 「2006년 서울시통계연보」, 서울.

<인터넷 자료> <http://www.krihs.re.kr>

제20조 (편집방법)

논문은 아래 ①~⑤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단, 쪽 아랫부분의 [논문집 일련쪽번호], [책명, 권호, 통권, 월호] 및 쪽 어깨에 들어가는 [논문제목], [투고자 성명], 각 논문 맨 뒤에 들어가는 [접수일자]등은 논문집이 인쇄에 들어가기 전 학회에서 만들어 넣는다.

① 논문제목

1. 논문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2. 국문과 영문제목은 행을 분리한다.
3. 부제목은 “:” 기호로 시작하고 주제목과 행을 분리하지 않는다.
4.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 전치사가 첫 단어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② 성명(국문, 영문)

1. 저자명은 국문, 영문 순으로 표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 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2. 우측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명은 행을 분리한다.
3. 국문과 영문명은 각각 한 줄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수가 많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을 분리할 수 있다.
4.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 순으로 하고, 성 다음에 “,”를 삽입한다.
5.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은 국문명 우측 끝 상단에 각각 저자 순서대로 위첨자 *, **,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처리한다. 단, 논문제목에 각주가 있는 경우 위첨자 기호는 **에서 시작한다.

(예)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

Hong, Kil-Dong·Kim, Kil Dong-Lee, Kil-Dong

6. 각주는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의 순서로 표기하며, 학회 관련 사항과 소속기관 사이에는 “,”를 삽입하여 구분하고, 저자 유형은 “()”로 처리하여 구분한다.

7.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은 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한 회원의 종류(정회원, 준회원, 특별 회원, 찬조회원, 명예회원) 또는 정관 제12조에 의거한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표기한다. 단, 제6조에 의거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과 공동 저자가 되는 경우에는 학회 관련 사항을 표기하지 않는다.
8. 저자 유형은 제7조에 의거하여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를 명기한 후 “:” 기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표기한다.
9. 제목과 저자명의 모든 각주는 기호 *, **, *** ... 다음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③ 요약문

1. 요약문은 국문 논문의 경우 “Abstract”를 제목으로 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을 제목으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한다.
2. 요약문의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3. 요약문의 분량은 200 단어 내외 또는 B5 용지 15줄 이내로 한다.
4. 요약문은 3인칭으로 표현한다.

④ 주제어

1. 주제어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5개의 단어 이내로 선택, 표기한다.
2. 주제어는 국문, 영문 순으로 하며, 국문은 “주제어”, 영문은 “keywords” 다음에 “:” 기호를 삽입하여 표기하고, 각 단어는 “,”로 구분한다.
3. “주제어”와 “keywords”는 행을 분리하고, 좌측 정렬을 한다.
4. 영문은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 주 제 어: 랜드마크, 도시계획,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keywords: Landmark, Urban Planning, City of Seoul, GIS

⑤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영문 논문의 경우 “Introduction”과 “Conclusion”)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I. 서론

1.

1)

(1)

①

II.

VI. 결론

4. 장과 절 제목은 아래 각 1행씩을 비우고, 항 제목 이하는 행을 비우지 않는다.

제21조 (편집세부사항)

① 용지의 설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종류	용지방향	여백주기(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B5	좁게	20	15	20	20	16	10	0

② 글자 및 문단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글자 모양

구분	예시	글꼴	장평(%)	자간(%)	크기(p)	속성	비고
제목 국문	국문	휴먼명조	95	0%	18	진하게	
제목 영문	English	휴먼명조	95	0%	12	진하게	
성명 국문	홍길동	맑은고딕	95	0%	10	보통	
성명 영문	Homg, Gil Dong	휴먼명조	95	0%	10	보통	
초록 제목	Abstract	휴먼고딕	95	0%	9	진하게	
초록 본문		휴먼명조	95	0%	8	보통	
주제어 제목	키워드	휴먼고딕	95	0%	8	이탤릭/보통	국문, 영문
주제어 내용	키워드1	휴먼명조	95	0%	8	보통	국문, 영문
소속	한국대학교	휴먼명조	95	0%	8	보통	
본문 장제목	I. 서론	맑은고딕	95	0%	11	진하게	
본문 절제목	1. 연구배경	HY중고딕	95	0%	10	진하게	
본문 소절제목	1)	HY중고딕	95	0%	10	보통	
본문내용	본문내용	휴먼명조	95	0	9.5	보통	
표 제목	표2	돋움	95	0	9	보통	
표 내용	표 내용	돋움	95	0	8.5	보통	
표 주석	표 주석	휴먼명조	90	0	8	보통	
그림 제목		돋움	95	0	9	보통	
그림 주석		휴먼명조	90	0	8	보통	
각주		휴먼고딕	90	0	8	보통	
인용문헌 제목		휴먼고딕	95	0	10	진하게	
인용문헌 내용		휴먼명조	95	0	9	보통	

문단 모양

구분	줄간격(%)	날말간격(mm)	왼쪽여백(ch)	들여쓰기	정렬방식
제목 국문	150	0	0	0	가운데
제목 영문	130	0	0	0	가운데
성명 국문	130	0	0	0	우측정렬
성명 영문	130	0	0	0	우측정렬
초록 제목	150	0	3	0	좌측정렬
초록 본문	150	0	0	2	양쪽혼합
주제어 제목	130	0	0	0	양쪽혼합
주제어 내용	130	0	0	0	양쪽혼합
소속	130	0	0	0	좌측정렬
본문 장제목	150	0	2	0	양쪽혼합
본문 절제목	150	0	3	0	양쪽혼합
본문 소절제목	130	0	3	0	양쪽혼합
본문 내용	170	0	0	3	양쪽혼합
표 제목	150	0	0	0	(상단) 왼쪽
표 내용	130	0	0	0	양쪽혼합
표 주석	130	0	0	0	좌측정렬
그림 제목	150	0	0	0	(하단) 가운데
그림 주석	130	0	0	0	좌측정렬
각주	130	0	0	0	양쪽혼합
인용문헌 제목	150	0	0	0	양쪽혼합
인용문헌 내용	150	0	0	0	양쪽혼합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

임원명단

고 문 김혜천(목원대), 전경구(대구대), 정철모(전주대), 황희연(충북대)

명예회장 김호철(단국대)

회 장 이명훈(한양대)

부 회 장 김주진(토지주택연구원), 김현선(홍익대), 우신구(부산대), 이재우(목원대),
최민성(델코리얼티그룹)

상임이사 강명구(서울시립대), 김세용(서울주택도시공사), 김순호(인천시청),
김항집(광주대), 김현숙(전북대), 김형순(서울감정평가법인), 남광우(경성대),
박순신(이너지시티), 박신영(한국도시연구소), 박태원(광운대), 성낙문(교통연구원),
오세경(동아대), 이성현(대구중구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제선(연세대),
임병호(대전발전연구원), 임영진(삼호기술공사), 장남중(서울연구원),
장은제(에스디에이엠씨), 조미정(참도시연구소), 차흥권(법무법인 을지),
최창규(한양대), 홍성덕(LH), 황지욱(전북대)

이 사 강명기(한일회계법인), 고준호(한양대), 권영인(교통연구원), 권용일(대구한의대),
김선아((주)SAK건축사사무소), 김주영(상지대), 문재혁(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박상섭(DA그룹), 박상훈(지우감정평가법인), 박승훈(계명대), 박인권(서울시립대),
박정은(국토연구원), 박종태(경북도청), 성현곤(충북대학교), 손영채(해승건축),
여옥경(한양사이버대), 오규만(한양자산관리), 오민경(태평양감정평가법인),
유인재(감사원), 이광균(성진리얼티), 이상준(토지주택연구원), 이수기(한양대),
이재순(호서대), 이정재(신동아건설), 이혜경(단국대), 임동일(강릉원주대),
장명준(대구대), 최병소(크마이앤씨), 최충익(강원대), 허재량(한국토지주택개발),
홍록희(대림산업)

감 사 김인기(공무원연금공단)

도시재생 제5권 제2호

서기 2019년 12월 30일 인쇄

서기 2019년 12월 31일 발행

<비 매 품>

발행인: **이 명 훈**

편집인: **이 재 우**

발행처: **(사) 한국도시재생학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8호

TEL. 02-539-7766,

E-mail: kura2015@daum.net

편집제작: 지샘출판사(TEL: 02-461-5858)